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발자취... ⑩

해외파견근로자 건강진단회고

우리나라에서 산업보건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도 벌써 3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못해서 새롭게 산업보건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가끔 보게된다. 필자가 이에 대한 글을 좀 써보고자 하는것은 몇사람들의 권유가 있었고 또 기억에 의존해야 하기때문에 기억이 사라지기전에 어느대로 기술해 보고자 하는것이 며 후에도 정리 작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물론 뚜렷한 기록이 없기때문에 필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추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릇되게 전달될 위험도 있어서 망서려졌지만 쓰지 않는 것보다는 나올것 같아 시작하였다. 글을 써나기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나가고자 하니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이 광 목

우리나라의 산업보건분야에서 또 하나의 장이라 볼수 있었던 것중 하나는 해외파견 근로자의 건강관리문제였다. 이 분야에서도 파견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주였다.

1965년 처음 서독에서 광부의 파견과 간호사의 파견을 위해 음으로써 이들을 선발하고 취업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었다. 건강진단을 의뢰받은 병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 부속 성모병원 세곳이었다.

이때 서독에서 정한 최저의 건강기준이 있었고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추가한 선발기준이 있었으며, 건강진단의 Form은 서독에서 보낸것을 이용하게 되었다. 지금 그 기록을 남겨두지 않아서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건강진단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항목중 기억에 남는 항목으로서는 광부의 경우에 있어서 체중항목이었는데 이 기준을 노동부에서 정하였다고 한다. 그때 58 kg 이상이 기준이었으며 간호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

혼이며 임신하지 않았을 것(이것은 서독의 요청이었다)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다.

대충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여 본다. 그때는 성모병원에서는 산업의학연구소에 건강진단을 일임하였기 때문에 필자가 그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필자가 건강진단을 직접 시행하였던 것은 아니며 청력검사만 돕게 되었고 각각의 임상과에서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여 종합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한 것이다.

건강진단은 우선 노동부에서 송부되어 온 대상자 명단에 의하게 되었는데 이것부터가 문제가 되었다. 명단이 영문으로만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명단을 가지고 건강진단에 응한 근로자를 확인하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영문으로 표기된 이름을 호명해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하는데 있어서 표준화되어 있지 않

았기 때문에 호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다. 영문표기가 말썽을 일으킨 또 다른 일이 있었다.

당시 건강진단에 불합격된 근로자가 다시 응모해서 이름 표기를 달리하여 재차 검사를 받는 일이 있기 때문이었다. 불합격되는 질병중에 가장 많았던 것이 체중과 기생충 그리고 흉부X-ray 소견이었는데 이중에서도 흉부X-ray 소견에 문제가 많았다. 예를 들면 성모병원에서 불합격된 근로자가 다시 다른 병원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였으며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본인이 밝히지 않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밖에 없는 일이었는데 본인들이 처음 불합격 판정을 내린 병원에 가서 항의를 함으로써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당시 건강진단 규정에 X-ray 촬영을 흉부 2매, 요추 2매, 측면 각각 2회 실시하고 1매씩 서독에 송부해야 했고 다시 서독에서 촬영한 것과 비교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판정에 신중을 기하고는 있었으나 병원 간의 판정에서 차이가 나는 일이 종종 있었고 이러한 일이 마치 병원의 부정인 것처럼 알려져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수천명의 서독광부중 일단 서독에 파견된후 서독에서의 건강진단에서 불합격되어 되돌려 보내진 근로자는 광부 1인(폐결핵), 간호사 2인(임신)이었고 이들을 위해 사용된 모든 비용은 건강진단을 담당하였던 병원에서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처음부터 서독정부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었다.

동일인이나 영문표기를 다르게 한 근로자때문에 말썽이 나자 이를 가려내기 위해 한글을 병용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해결되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다. 필자는 이 건강진단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는 건강진단을 위한 호명, 접수, 동일인을 가려내는 업무 등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렇게도 어려웠다. 동일인을 찾아 우선 불합격명단에 넣으면 얼마후 성모병원의 고위 교수들로부터 압력적인 청탁이 온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부와 3개병원이 서로 합의한 사

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청탁을 들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설명드리고 할 수가 없다고 하였더니 “실수로 알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되는 일이 아닌가”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도 나중에 병원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니된다고 거절하였더니 그후 그때의 교수께서는 성모병원을 그만 두실때까지 필자의 인사를 받지 않으시기도 했다. 참으로 뒷맛이 개운치 않은 일이었다. 이러한 비슷한 일은 청력검사에서도 자주 있었다. 당시 건강기준이 1,000 Hz 40dB이었는데 좀 봐달라는 경우이었다. 사실 광산의 소음은 심하기 때문에 난청자의 취업이 기피되고 있었으며 후에 보상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병원에서 책임을 지게될 경우가 있어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6.25 동란시 참전하였던 군출신중 포병병과 출신에게 난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건강기준에 걸리는 근로자가 많았던 것이다. 동정은 가지만 어찌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이들의 건강진단시에는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파견되어 감독을 하였다. 그런데 이 감독관이 또 문제였다. 건강진단을 많이 하다보니 체격만 보아도 1kg차정도까지 체중을 알 수 있었다. 필자가 실제의 감독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자니 도저히 58kg의 체중이 안될만한 사람이 59kg으로 통과되고 있었다. 이때 체중계 밑을 보니 그 감독관이 체중계를 한쪽발로 지긋이 밟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중계에 올라서라고 하였더니 56kg이었다. 여러번 겪은 일이지만 심지어 팬티속에 3kg의 납판을 양허벅다리에 감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납을 전부 회수해 두었다가 나중에 회식하는데 보탠 일도 있었다. 또 체중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은 진찰받기 직전 물을 너무 마셔서 내과 진찰시 배를 만지면 입에서 물이 솟아나는 코메디같은 일이 많았는데 이 경우는 합격시킬 수 밖에 없었다. 체중측정시 공복이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물을 마시는 경우는 또 당뇨가 조금씩 나오는 사람, 우로빌리노젠이 약간 검출되는 사람을 재

검할 때 볼 수 있었던 일이었다. 어쨌든 건강진단의 판정을 어떤 수치로만 결정할 때 여러가지 우스운 장면이 연출되는 것은 아마 피치못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건강진단 결과가 본인에게 큰 영향을 줄 때는 여러가지 부조리도 따르게 마련인데 이로 말미암아 많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서는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생략하기로 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간호사 2명의 임신여부가 말썹이 났었는데 이들의 임신이 문제가 된 것은 서독에 가서 근무중 몸이 불어와서 일어났다. 그중 한명은 임신월수로 보아 건강진단 이전에 임신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한사람은 건강진단후 약 2개월후에 서독으로 가는 것이 보통인데 그 임신시기가 문제였다. 건강진단 이전이면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통보가 왔다. 그런데 이 경우는 임신시기가 검진후이었으나 판독전인지 판독후인지를 가릴 수가 없었고 후에 본인도 함구하고 있어서 밝힐 수 없었다. 필자가 속해 있던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후의 상황은 알 수가 없으나 귀국당한 일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지금도 좀 납득하기 힘든 일은 여성을 건강진단할 때 임신여부를 판정해야 하는지 아리송하다. 당시에 미혼이라는 증거로 호적대조 그리고 임신여부는 문진에 의하였는데 이것만으로는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연유로 임신초기때의 임신여부확인이 100% 가능한지를 전문의에게 문의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100% 확인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답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 검진후 과독때까지의 기간에 임신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었을까도 생각했다. 아무도 대기중에 임신하지 말라는 주의 준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 두 임신녀가 왜

그리 문제가 되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건강진단때 또 한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 떠나기 전날에야 서독에 보낼 정식의 무기록카드가 작성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다음날 9시까지 김포공항에 서류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어떤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으나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 부원장인 윤임중 교수와 같이 야간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반드시 타이프로 쳐야했고 근로자당 여섯부씩 작성해야 했는데 정식 규격용지가 보관용이었기 때문에 두꺼워서 도저히 먹지를 끼워칠 수 없었고 겨우 두장씩 먹지를 끼워 썼었는데 빈칸을 메우는 일이라 빨리 칠 수도 없었다. 더욱이 우리말로 되어 있는 의무기록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작성하여야 했기 때문에 잠한숨 자지 못하고 수백명(1차)의 의무기록을 작성하여 책상도 치우지 못한채 김포로 달려가 겨우 시간 안에 도착하였다. 돌아와서 보니 너무 힘을 주어 타이프라이터 Key를 때렸기 때문에 손가락 마디가 쭈시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독일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아무리해도 알 수가 없어서 독일에서 귀국하신 교수에게 큰 실례되는 일인지 알면서 야간에 전화를 걸었던 일이 생각난다. 대부분은 의학용어이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다” “아니다” 였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흉부 X-ray를 처음 찍은 병원, 최근에 찍은 병원명인데 당시 광부응모자의 상당수가 “육군논산신병훈련소”라 답변한 것을 독일어로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 수 없었다. 2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잊어버려서도 모르겠다. 또다시 독일어로 그런 Typing을 할 일도 없을 것이고 지금 다시 알고 싶지도 않다.

